

##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(앞쪽)

|      |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|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20일 |
|------|-----|----------|

[ ] 간이측정기 성능인증

[ ] 정도검사

[ ] 검정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상호(사업장명칭)           | ② 사업자등록번호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)      | ④ 생년월일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주소<br>(전화번호 : )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 사업장소재지<br>(전화번호 : ) |           |
| 업무,<br>측정 분야<br>및 대상<br>기기 | ⑦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⑧ 정도검사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⑨ 검정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신청<br>요건                   | ⑩ 기술능력 확보 현황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⑪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      |           |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 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청인<br>제출서류   | 1. 기술능력·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<br>2.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| 수수료<br>없음 |
| 담당공무원<br>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2. 사업자등록증명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) |           |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작성방법

⑩란과 ⑪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